

---

2018학년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



원 광 대 학 교

# 목 차

1. 전형일정 .....	1
2. 모집인원 .....	2
3. 지원자격 .....	2
4. 제출서류 .....	5
5. 전형요소 및 성적반영(공통) .....	9
6. 선발방법 .....	10
7. 전형료 .....	11
8. 지원자 유의사항 .....	12

**1. 전형일정** ※ 전형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17.10.10(화) 09:00 ~ 10.13(금) 18:00까지	·www.wku.ac.kr ·lawschool.wku.ac.kr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17.10.17(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방문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1층 (건물번호⑫) 입학관리과	·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방문제출은 토요일 공휴일 제외)
1단계 합격자 발표		2017.11.10(금) 17:00예정	·www.wku.ac.kr ·lawschool.wku.ac.kr	·개별통보하지 않음 ·면접 시간 및 장소확인
심층면접	가군	2017.11.18(토)	·법학전문대학원 지정고사장	·접수증, 신분증 지참 ·지원인원에 따라 일시가 연장 혹은 변경될 수 있음
	나군	2017.11.25(토)		
합격자 발표		2017.12.05(화) 17:00예정	·www.wku.ac.kr ·lawschool.wku.ac.kr	·개별통보하지 않음 ·합격자는 아래의 등록기간 내에 예치금 및 등록금 납부
예치금 고지서 출력		2017.12.29(금) 17:00예정	·www.wku.ac.kr ·lawschool.wku.ac.kr	·고지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개별발송하지 않음)
예치금 등록		2018.01.02(화)~01.03(수)	·본교 지정은행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됨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2018.01.04(목)~01.05(금)	·www.wku.ac.kr ·lawschool.wku.ac.kr	·개별통보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예치금 납부
	등록	2018.01.08(월)~01.09(화)	·본교 지정은행	·고지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개별발송하지 않음)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됨
이중등록자 포기 마감일		2018.01.30(화) 17:00까지	·www.wku.ac.kr ·lawschool.wku.ac.kr	
최종 등록		2018.01.31(수) ~ 2018.02.02(금)	·본교 지정은행	·고지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개별발송하지 않음)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됨
학생선발 완료		2018.02.28(수)		

## 2. 모집인원

입학정원(명)	전형유형	모집인원(명)		
		가군	나군	합계
60	일반전형	30	25	55
	특별전형	-	5	5
	계	30	30	60

- 가. 가, 나군 동시 지원할 수 있음
- 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총 12명 이내(가군 6명, 나군 6명) 선발 예정임
- 라.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는 입학생 중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만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생의 비율을 30%이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차상위 가구, 단 비율 미충족시 타 특별전형에서 선발)
- 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결원인원 발생 시,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사정원칙에 의거하여 예비 후보자 순번대로 선발

## 3. 지원자격

### 가. 일반전형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1) 2018년 2월 이전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을 인정)
- 2)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언어이해, 추리논증 성적을 취득한 자
- 3) 지정된 기간(2015.11.01 ~ 2017.10.17) 내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TOEIC, TEPS, TOEFL iBT에 한함) 성적을 취득한 자(TOEIC은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제340회차 시험까지만 인정)로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 원본제출 가능한 자

### 나. 특별전형 :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신체적 약자

-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에 의하여 1~6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경제적 약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가구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상의 차상위 계층<복지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복지급여 수급자 :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가구

#### 3) 사회적 약자

- 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자
  - ※ 저소득계층의 해당 여부는 아래 [표1] ~ [표4]「저소득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2014~2017년) 이하에 해당한 가구의 학생이며, 이 자격은 지원 가능 요건이고, 재산세 과세(납세)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심사를 통하여 인정 여부 판단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
-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손)자녀
- 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와 자녀
- ④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자녀
-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자녀
-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 출신자
-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과 그의 자녀
- ⑨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족 자녀
- ⑩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로서 동 재학 기간(6년) 동안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 : 행정구역상 읍·면에 해당하는 전 지역

※ 도서·벽지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 지원자격 유의사항

- (1)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함
- (2) 재학 중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에도 각각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해당하는 거주지 및 학교이어야 함
- (3)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4)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신고 말소된 경우에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5)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내에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로 전입한 자는 인정함

※ 부모 이혼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사망·실종(법률상)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름

공통	이혼·사망·실종(법률상) 이전까지 부·모·본인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사망·실종	부·모 중 한명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표1] 2017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소득인정액(A×0.5)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보험료(A×0.5×0.0306)	25,290	43,062	55,706	68,351	80,996	93,641	106,286

주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2017. 01 ~ 원서접수 전 평균 납부액

주2)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주3)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

**[표2] 2016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인정액(A×0.5)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3,414,340
보험료(A×0.0306×0.5)	24,859	42,329	54,759	67,188	79,618	92,048	104,478

주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2016. 01 ~ 2016. 12 평균납부액

주2)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주3)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표3] 2015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소득인정액(A×1.2)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보험료(A×1.2×0.03035)	22,481	38,279	49,520	60,761	72,001	83,242	94,483

주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2015. 01 ~ 2015. 12 평균납부액

주2)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주3)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 가구 : 2,902,892원)

**[표4] 2014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A×1.2)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보험료(A×1.2×0.02995)	21,686	36,925	47,769	58,612	69,455	80,298	91,141

주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2014. 01 ~ 2014. 12 평균납부액

주2)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주3)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 가구 : 2,837,627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2017년, 2016년) 및 소득인정액(2015년까지의 최저생계비의 120%)에 연도별 건강보험요율<2017년 6.12% 中 본인부담금 50% (3.06%, 직장가입자 기준)>을 곱하여 산정함

◎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요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4. 제출서류

##### 가.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참고사항
입학지원서	. 인터넷 접수 후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학사학위과정 졸업(예정)증명서	.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모두 제출 . 복수 학위 취득자면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인 경우 : 학사학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 .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자는 모든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 복수학위자는 본인이 지원한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제출 . 출신대학에서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반드시 평균평점과 만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예 : 3.52/4.5, 3.03/4.3, 2.90/4.0 <b>※ 출신대학의 평점이 4.3, 4.0일 경우 4.3, 4.0 만점의 성적표 제출</b>
공인영어능력 성적표	. 2015. 11. 0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 원본 제출 (TOEIC은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제340회차 시험까지만 인정) ▶2017. 10. 17.(화) 17: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우편소인분 불인정)
학적부	. 타 법전원 재학여부와 징계여부 확인 . 징계사실 여부 및 자술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입학(합격) 취소할 수 있음
취학허가서, 전역예정증명서	. 현역 복무 중인 군인 및 병역법, 기타 사유로 근무 중인 자 (단, 2018년 3월 입학 후 재학이 가능한 자만 제출) . 전역예정증명서는 2018년 2월 말까지 전역예정자만 제출

**나. 외국대학 출신자(해당자)**

제출서류	참고사항
① 정식 인가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출신대학이 UNESCO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의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Worldwide Database)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세부 detail 화면 출력</li> <li>·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한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급하는 출신 대학에 대한 인가확인서 추가 제출</li> <li>· UNESCO IAU 등재여부는 <a href="http://www.whed.net/home.php">http://www.whed.net/home.php</a> 에서 확인</li> </ul>
② 졸업(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인증절차를 거친 서류만 제출</li> <li>㉗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경우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02-739-7400)의 「인장증명」</li> </ul> </li> <li>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입증서류</li> </ul>
③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㉙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자는 教育部學位與研究生教育發展中心 (“<a href="http://www.cdgd.edu.cn">http://www.cdgd.edu.cn</a>) 또는 中國高等學教學生信息諮詢與就業指導中心 (“<a href="http://www.chsi.com.cn">http://www.chsi.com.cn</a>)에서 발급하는 학력인증확인서(“中國高等教育學歷認證報告”)도 가능</li> </ul>
④ 확인서(번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작성해야 함</li> </ul>
⑤ 기타 증빙자료	<p><b>※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에도 불구하고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서류미비로 불합격처리 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학 일 경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증명서에 졸업소요학점, 재학기간, 이수학기, 성적 등급 평점 기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재학증명서로 대처. 단, 해당대학의 졸업(수료)소요학점, 재학기간, 이수학기, 성적등급 평점 기준에 관한 내용 규정 또는 학칙 사본도 같이 첨부(예) 재학기간, 이수학기, 풀타임 여부가 표시된 proof of Enrollment)]</li> <li>- 성적증명서에 졸업소요학점, 재학기간, 이수학기, 성적 등급 평점 기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로 대처. 단, 해당대학의 졸업(수료)소요학점, 재학기간, 이수학기, 성적등급 평점 기준에 관한 내용 규정 또는 학칙 사본도 같이 첨부</li> <li>- 기타 4년 수료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처. 단, 해당대학의 졸업소요학점, 재학기간, 이수학기, 성적 등급 평점 기준에 관한 내용 규정 또는 학칙 사본도 같이 첨부</li> </ul> </li> </ul>
<p><b>※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 ~ 90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준비 바람</b></p> <p><b>※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된 묶음서류에 사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원본(학위기 및 밀봉된 성적증명서 봉투)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학위기 등 중요서류 제출에 주의하시기 바람</b></p>	

- 1)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2017. 10. 17(화) 17시까지 원본을 지참하고 본교에 방문하여 확인(원본대조필)을 받기 바람
- 2) 국문 이외 다른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본교 제4호 서식)
- 3) 6년제 대학(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본과(1~4학년) 성적을 별도로 산출하여 제출



다. **특별전형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신체적 약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에 의하여 1~6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증명서(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li> <li>○ 자기확인서(본교 제3호 서식)</li> </ul>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경제적 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b>수급자 또는 그의 가구</b>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본인 기준)</li> <li>○ 가족관계증명서(본인)</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자기확인서(본교 제3호 서식)</li> </ul>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상의 차상위 계층<복지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복지급여 수급자 :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본교 제3호 서식)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가구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본교 제3호 서식)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사회적 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 <본인 및 자녀 지원 공통 제출> (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b>저소득계층 공통서류</b> <자녀지원 시 제출> <b>(모든 서류 2014~2017년분 제출요함)</b>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부) ②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전부) ③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가구원 전부) ④ 재산세 (국세·지방세) 과세 (납세) 증명서 (가구원 전부) 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가구원 전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의 이혼, 재혼, 사망 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⑦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전부) ⑧ 주민등록초본 (가구원 전부) ⑨ 자기확인서 (본교 제3호 서식)	. 국가보훈(지)청  ※ 각 번호의 발급기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주민센터, 세무서 ⑤ 세무서 ⑥ 주민센터 ⑦ 주민센터 ⑧ 주민센터 ⑨ 본교 3호 서식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자	. 독립유공자 확인원 <본인 및 자녀 지원 공통 제출> . 저소득계층 공통서류 (①~⑨) <자녀지원시 제출>	. 국가보훈(지)청 ▷ 공통서류는 상단 발급기관 확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자	. 의사상자 증명서 <본인 및 자녀 지원 공통 제출> (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저소득계층 공통서류 (①~⑨) <자녀지원시 제출>	. 보건복지부 ▷ 공통서류는 상단 발급기관 확인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본인 및 자녀 지원 공통 제출> . 저소득계층 공통서류 (①~⑨) <자녀지원시 제출>	. 국가보훈(지)청 ▷ 공통서류는 상단 발급기관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자	.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 확인원 <본인 및 자녀 지원 공통 제출> . 저소득계층 공통서류 (①~⑨) <자녀지원시 제출>	. 국가보훈(지)청 ▷ 공통서류는 상단 발급기관 확인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 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자	. 특수임무 유공자 확인원 <본인 및 자녀 지원 공통 제출> . 저소득계층 공통서류 (①~⑨) <자녀지원시 제출>	. 국가보훈(지)청 ▷ 공통서류는 상단 발급기관 확인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 출신자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자	.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저소득계층 공통서류 (①~⑨)	. 해당 복지시설 ▷ 공통서류는 상단 발급기관 확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본인 및 자녀 지원 공통 제출> . 저소득계층 공통서류 (①~⑨) <자녀지원시 제출>	. 시군구청 ▷ 공통서류는 상단 발급기관 확인
	.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자	.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 증명서 . 저소득계층 공통서류 (①~⑨)	. 주민센터 ▷ 공통서류는 상단 발급기관 확인
	.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6년 교육과정(입학~졸업)이수자로서 경제적 으로 취약한 계층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출신자 제외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원본대조필)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부, 모, 본인 각 1부) - 재학기간 동안 모두의 주소 변동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기간 동안 부모 이혼, 재혼, 사망 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 저소득계층 공통서류 (①~⑨)	. 중·고등학교 및 주민센터 ▷ 공통서류는 상단 발급기관 확인

1) 가구의 정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를 따름

## 5. 전형요소 및 성적반영(공통)

### 가. 1단계 전형

	학부성적	영어	법학적성시험	계
배점	20	20	40	80
기본점수	17	16	30	63
실질부여점수	3	4	10	17
실질반영비율	18% (3/17)	24% (4/17)	59% (10/17)	100% (17/17)

#### 1) 학부성적 반영방법

가) 총 20점 만점에 기본점수 17점을 부여함

나) 산출방법 : (평점 / 4.5 \* 3) + 17(기본점수)

(1) 전적대학 성적이 4.5만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함

(2) **출신대학의 평점이 4.3, 4.0일 경우 4.3, 4.0 만점의 성적표 제출**

예시) 4.3만점에서 2.86을 취득한 경우 :  $4.5 \times 2.86 \div 4.3 = 2.99$

#### 2) 어학성적 반영방법

가) 총 20점 만점에 기본점수 16점을 부여함

나) 기준점수 이상 만점(20점), 이하 기본점수 16점

다) 산출방법 : [(취득점수 - 하한기준점수) ÷ (상한기준점수 - 하한기준점수) × 4] + 16

(1) 각 어학점수 기준(단TOEIC는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TOEIC	TEPS	TOEFL iBT	환산점수
상한기준점수	950 이상	857 이상	112 이상	20.00
하한기준점수	750 이하	597 이하	85 이하	16.00

예시) 토익 800점 취득한 경우 :  $\{(800-750) \div (950-750)\} \times 4 + 16 = 17$

#### 3) 법학적성시험 반영방법

가) LEET성적 반영(표준점수만 반영)

나) 평균점수 : [(언어이해 취득점수 \* 0.5) + (추리논증 취득점수 \* 1.5)] / 2

다) 산출방법 : (평균점수 + 75) × 2 ÷ 7

(1) 예시) 언어이해 표준점수 46점, 추리논증 표준점수 29점

(2) 예시) 평균점수 =  $[(46 \times 0.5) + (29 \times 1.5)] \div 2 = 33.25$

(3) 예시) 반영점수 =  $(33.25 + 75) \times 2 \div 7 = 30.92$

### 나. 2단계 전형

	1단계 성적	심층면접	계
배점	80	20	100
실질부여점수	17	7	24
실질반영비율	70.83%	29.17%	100%

1) 심층면접

- 가)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와 제시된 주제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다양한 지식과 경험 및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나) 개별면접 방식으로 인성 영역과 지적 영역을 평가함
  - (1) 인성 영역 : 도덕성, 가치관, 직업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등을 평가함
  - (2) 지적 영역 : 사고력, 분석력, 판단력 등 발전가능성을 평가함
- 다) 면접 대상자는 수험표(접수증)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이전의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라) 면접 장소에는 휴대전화, 무선송신기, 호출기 등 불필요한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음

6. 선발방법

가. 1단계 선발

- 1) 1단계 전형요소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500%를 선발함(지역인재 쿼터 미적용)
- 2) 합격자 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나. 2단계 선발

- 1) 2단계 전형요소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전형별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다. 비 법학사 및 타 대학 출신자, 지역인재 쿼터

구 분	내 용
비 법학사 쿼터	총 모집인원의 36.6%(22명) 이상을 비 법학사 중에서 선발
타 대학 출신자 쿼터	총 모집인원의 47.5%(29명) 이상을 타 대학교 출신자 중에서 선발

- 1) 학사편입으로 복수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최초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을 출신대학으로 봄
-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2018년 2월 이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총 12명 이내(가군 6명, 나군 6명) 선발 예정임※ 지역대학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름

라. 법학/비법학 구분

구 분	내 용	판 정
1	법학으로 입학하여 법학사를 취득한 자	법학
2	비법학으로 입학하여 전과(일반편입)을 통해 법학사 취득자	
3	법학 전공자가 부전공으로 비법학을 수학한 경우	
4	법학으로 입학하여 전과(일반편입)을 통해 비법학사 취득자	비법학

구 분	내 용	판 정
5	비법 전공자가 부전공으로 법학을 수학한 경우	본인 선택
6	비법 학위자가 학사편입을 통해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	
7	법학 학위자가 학사편입을 통해 비법학사를 취득한 경우	
8	학위인정과정을 통해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9	법학 전공자가 복수전공으로 비법학 학위를 취득한 경우	
10	비법 전공자가 복수전공으로 법학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 복수전공자 전학년 성적 반영(4년 이상 재학 포함)
- 2) 가군, 나군 복수 지원자의 경우 본인선택 시 동일하게 선택(법학사 혹은 비법학사)
- 3)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름

마. 자교 / 타교 구분

구 분	내 용	판 정
1	우리 대학 학사학위 자	자교
2	학사편입을 통해 복수학위가 있는 경우	최초 대학
3	우리 대학 졸업 후 학위인정과정을 마치고 복수의 학위가 있는 경우	
4	학위인정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타교
5	타교 졸업 후 우리 대학 석, 박사 학위가 있는 경우	

- 1)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름
- 2) 학사학위 이외의 석, 박사 학위는 적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바. 총원 방법

- 1) 후보자 총원은 모집 군별 전형유형별로 내부 원칙에 따라 총점 순에 의하여 총원함
- 2) 미등록등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전화로 개별통지, 후보합격자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에 귀착사유가 있음

사. 2017학년도에 발생한 결원인원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원인원 발생 시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사정원칙에 의거하여 예비 후보자 순번대로 선발

## 7. 전형료

가. 200,000원 (1단계 전형 불합격자는 50,000원 환불, 면접 결시자는 환불대상 아님)

※ 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부적격자의 경우 1단계 불합격처리 되며 전형료 50,000원 환불

## 8. 지원자 유의사항

###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1) 법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에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직업, 병역사항,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모집단위(지방학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출신대학 및 학부, 학점, 학위, 졸업(예정)연도}, 환불계좌정보
-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법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및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입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5)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됨. 다만,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학적부에 기재 되어 학사운영 및 각종 증명에 사용되므로 영구적으로 보관됨.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본인의 동의를 필요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를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원서접수 및 일반 유의 사항

- 1) 본교와 동일한 군(가군 또는 나군)에 속하는 타 대학교에 복수 지원하거나 2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중등록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입학원서 작성오류, 필수적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음
- 2) 자격기준은 모집요강을 숙지하고 지원자 본인이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 시 신중하게 접수하여야 함
-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본인의 증명사진 (규격 4×5cm), 대학성적표, 어학시험 이미지 파일(형식 : JPG)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
- 4) 본교 가군과 나군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군, 나군 모두 합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가군과 나군 모두 일반전형에 합격하면 가군 합격으로 처리함  
나) 특별전형 합격자가 가군에도 합격하면 특별전형 합격으로 처리함
- 5) 원서접수 이후에는 정정 및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6) 지원서 입력착오 또는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연락처 변경 시 즉시 본교 입학관리과로 연락 바람)
- 7) 본교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서류송달 중에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음

- 8) 모든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는 추후 발급기관을 통하여 조회·확인하며, 지원자는 본교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과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9) 입학관련 모든 서류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관련 정보 기재, 암시할 시 실격 처리됨
- 10) 장애가 있는 지원자는 원서 접수 시에 그 사실을 본교에 통지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1) 합격자 발표 및 등록(예치)금 고지서는 본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므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합격증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간까지만 출력이 가능함. 합격자가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함
- 12)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자에 한해 졸업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13)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14) 원서접수 기재 사항 중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발언 또는 암시 할 시 즉시 실격조치 됨

다. 면접 유의 사항

- 1) 면접에 응시하지 않거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2) 면접대기장 입실 시 금속탐지기로 휴대품 검색을 실시하며, 소지한 휴대전화, 녹음기, 무전기, 카메라, PDA, MP3 등 전자기기는 일괄수거 보관 (면접고사 중 개인 소지 적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함)
- 3) 면접고사 중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발언 또는 암시 할 시 즉시 실격조치 됨

라. 입학관련 유의사항

- 1) 수학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2) 입학전형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제기 및 불복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심사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른 민원해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3) 대학졸업예정자가 입학 전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함
- 4) 입학 첫 학기(1학년 1학기)는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수 없음
- 5) 현역 복무 중인 군인과 병역법, 기타 사유로 근무 중인 자는 소속부대장 또는 복무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2018년 1학년 1학기 재학이 가능한 자)와 2018년 2월까지 전역하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특별전형합격자의 경우 등록금전액을 지급하는 삼동윤리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지라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결정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마. 문의처

- 1) 원광대학교 입학관리과 : Tel) 063-850-5262~4 / Fax) 063-850-5265
- 2)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 Tel) 063-850-5083~5 / Fax) 063-850-5086
- 3)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http://lawschool.wonkwang.ac.kr/>

아래 서식은 참고용이며,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1호 서식]



2018학년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지 원 사 항	가군		나군			접수 번호	사 진 (4cm ×5cm) (3개월이내 탈모사진)
	<input type="checkbox"/> 일반전형		<input type="checkbox"/> 일반전형 <input type="checkbox"/> 특별전형				
	학사 구분		<input type="checkbox"/> 법학사 <input type="checkbox"/> 비법학사				
	출신학교		<input type="checkbox"/> 본교 <input type="checkbox"/> 타교				
지 원 자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국적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이메일					
	주 소	00000					
직 업			병역사항				
학 력	고등학교	(졸업년월)	고등학교	소재지 :			
	편입 전 대학교 (학사편입)	(졸업년월)	대학교	학부(과)	평점	/	(백분위:)
		학위구분	학위명	학위등록번호		선택	
	대학교	(졸업년월)	대학교	학부(과)	평점	/	(백분위:)
		학위구분	학위명	학위등록번호		선택	
대학원	(졸업년월)	대학원	학과	과정	졸업/수료		
법학적성시험 (LEET)	평가영역	언어이해영역		추리논증영역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공인영어능력시험		취득성적		취득일자			
전형료 환불계좌 (지원자 명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타 법전문 재학여부		징계여부					
<p>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성명: (서명)</p>							
<p><b>원광대학교 총장 귀하</b></p>							

※ 작성방법 : 학위구분은 법학/비법학, 학위명은 문학사, 법학사 등을 표기







## 확 인 서 (번역자)

번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 미등록 단기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습니다.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번역 대상물	
--------	--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번역자 :

원광대학교 총장 귀하

아래 서식은 참고용이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필수 항목 : 지원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및 입학전형을 위해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